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7.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4일, 박상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31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2.11.)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2.18.) 상정,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 4.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6.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상혁의원)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계엄의 선포·시행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전시나 무장폭동이 아닌 비무장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엄선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계엄 선포 시 전군(全軍)이 계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에서는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특수부대인 HID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하면서 그 규모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더해, 계엄군에 대한 지휘는 ‘군령’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에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니라 집권자의 자의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 함께 제출토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며,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법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